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

---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.27.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·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 -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적용 기간: 2021.7.27.(화) 0시 ~ 2021.8.8.(일) 24시

- \* 사적모임 제한(2021.7.18.) 조치는 2021.7.27.부터 본 조치로 대체하고, 공연장 관련 조치는 당초대로 2021.8.1.까지 적용

나. 적용 지역 : 14개 시·도

- \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 단계 : 거리두기 3단계

- 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-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###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#### ○ 대상 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3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장·박람회장, 마사지업소·안마업소, 국제회의장·학술행사, 종교시설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#### ○ 조치 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### ② 교통시설

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 ③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※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·경마·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### ④ 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- (3단계)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<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 예시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- 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.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⑤ 사회복지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-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
⑦ 학교(등교)

- 3단계: 밀집도 1/3 ~ 2/3 (고등학교는 2/3) 이내 준수

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- 2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- 3.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. 끝.

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**김재준** 전결 2021.7.27.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870 (2021. 7. 27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[oyeah5@motie.go.kr](mailto:oyeah5@motie.go.kr) / 대국민 공개